

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: 2023. 9. 27.
- 제 출 자: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3. 10. 4.(의안번호 제486호)
- 상정일자: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
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3. 10. 16.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이상학 교통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‘2022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협조 요청(행정안전부 자치 분권제도과-2483)’에 따라 근거 법령에 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이 없고 회의실적이 저조한 「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」를 폐지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(안 제17조~제23조)
-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명칭 변경 및 포함 내용 법률과 일치 (안 제5조)
 -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→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
 - 계획 포함 사항을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내용 포함으로 변경

- 시행규칙 위임조항 삭제 (안 제28조)
- 기타 띄어쓰기 및 체계자구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진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설치 근거 규정이 없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토록 한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관련 조문을 일괄 삭제하고,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, 전반적인 검토 결과 법제처의 <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>와 <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>을 두루 적용하여 법규 체계와 용어, 문장, 띄어쓰기 등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개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안 제2조제4호에서 “자전거정비소”를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(자전거 수리센터 운영)에 따라 “자전거 수리센터”로 고쳤으면서도 안 제9조제2항에서는 “자전거 정비소”로 띄어쓰기만을 적용하여 존치한 부분이나, 안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“2001. 1. 1이후”를 “2001년 1월 1일”로 고친 결과 감면 대상자의 범위가 현격하게 달라진 부분은, 특별히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수정 여부에 관한 토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□ 수정가결 내역

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제9조제2항 중 “**자전거 정비소**”를 “**자전거 수리센터**”로 한다.

제12조제4항제3호 중 “**2001년 1월 1일**”을 “**2001년 1월 1일 이후**”로 한다.

수정 전 · 후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9조(자전거 보관소·수리센터 · 대여 소의 설치 · 운영) ② 자전거 정비소 및 자전거 대여소의 장소 및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	제9조(자전거 보관소·수리센터 · 대여 소의 설치 · 운영) ② 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대여소의 장소 및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제12조(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· 운영) ④ <생략> 3.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막내를 출산한 가정 1/5 감면	제12조(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· 운영) ④ <생략> 3.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 1/5 감면